

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8-1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보육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변경
-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설치·운영 조문 정비
- 시립어린이집 다수 확충 및 정보접근성 용이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 조항 삭제
-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맞게 조문 정비

주요내용

-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현행 ‘3년’ 을 ‘5년 이내’로 정비 (안 제16조)
- 시립어린이집 설치·운영 조항 중 후단 내용 삭제.....(안 제20조)
- 시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 삭제.....(안 제21조 및 별표 1)
-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관련 단서조항 정비.....(안 제23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8. 6. 27. ~ 2018. 7. 17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4
- 방침결정문 : 붙임5

< 복임 1 >

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3년으로 하되”를 “5년 이내로 하되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”를 “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21조를 삭제한다.

제23조제3항 중 “그 학년도 종료일로 하고”를 “그 위탁기간의 종료일을 전 학년 도의 종료일로 하여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”로 한다.

별표 1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 위탁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.

소관 실·과		보육정책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보육정책과장 안동준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보육정책팀장 박현정
	담당자 성명·전화	마송희 (행정 2265)

< 불임 2 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위탁운영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탁기간은 <u>3년으로 하되</u>,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16조(위탁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5년 이내로 하되</u>,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0조(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<u>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제20조(설치·운영) ① -----</p> <p>----- <u>설치·운영</u></p> <p>----- <u>하여야 한다. <후단삭제>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1조(명칭 및 위치)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삭 제〉</p>
<p>제23조(위탁계약 및 기간 등)</p> <p>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위탁기간 종료일이 학기 중 일 때에는 <u>그 학년도 종료일로 하고</u>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. 단,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.</p> <p>④ ~ ⑥ (생 략)</p>	<p>제23조(위탁계약 및 기간 등)</p> <p>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<u>그 위탁기간의 종료일을 전 학년도의 종료일로 하여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,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